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1. 3. 12.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19년 중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리스크협의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사후보고를 내규화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협의회 개최 이전에 협의회 안건을 경영진에게 보고할 경우 리스크협의회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사후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그룹 시장리스크 측정 및 검증절차 강화

□ 그룹 시장리스크는 자회사의 포지션을 종합하여 측정되어야 하는데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상계를 반영하여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측정한 값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보고하고 있으며, 오류발생으로 인해 그룹 시스템을 재작업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 자회사 데이터와 오류발생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내부거래 상계 반영 등을 통해 정확한 값을 측정·보고하고 시스템 재작업시 오류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시장리스크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위기상황분석 업무 강화

□ 회사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 목표 설정, 시나리오 정의 등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나,

○ 위기상황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시나리오 설정 단계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으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위기상황에서도 시장리스크가 정상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는 등 위기상황분석 수행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 앞으로 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 이사회 및 경영진이 참여토록 하며,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합리적이고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신설 자회사의 리스크 한도 관련 전결권 강화

□ 신용공여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 및 배분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신설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동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정한 총 리스크 한도를 그룹 위험관리책임자가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 연중에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도록 전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유동성 비상조달계획 갱신절차 미흡

□ 회사는 그룹 유동성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최소 연1회 이상 갱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도,

○ 내규에는 비상계획의 유효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한다고만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한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룹 유동성 비상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결과를 이사회 보고없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만 보고하고 있으므로,

○ 최소 연 1회 이상 이사회의 승인 하에 유동성 비상계획을 갱신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비상계획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